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(곽상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3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9. 2.

발 의 자 : 곽상도 · 김희곤 · 정찬민
김정재 · 이종성 · 송석준
박대수 · 권영세 · 김도읍
김성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획재정부의 ‘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’ 6월호에 따르면, 2021년 4월까지 세입이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2조 7,000억원이 증가하였고, 올해 7월에 통과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르면 2021년도 내국세 세입 확대에 의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조 4,000억원 정도가 더 지급될 예정이다. 각 교육청은 이러한 재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2020년 말 기준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2조 3,000억원을 적립하고 있음.

한편 현행법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 및 행정 운영에 관한 재정수요 금액인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으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단위비용에 물가변동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며,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「고등교육법」 제2

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집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임(안 제5조제2항 신설 및 제6조제2항 등).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중전의 제2항) 전단 중 “제1항에”를 “제1항 및 제2항에”로 한다.

②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제2항 중 “등을”을 “및 학생 수 등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보통교부금의 교부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보통교부금의 교부) ① (현행과 같음)
	② <u>교육부장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보통교부금의 재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 및 행정 운영 등에 지원할 수 있다.</u>
② <u>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통교부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초, 지방자치단체별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각 시·도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</u>	③ -----제1항 및 제2항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조(기준재정수요액) ① (생략)	제6조(기준재정수요액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<u>등을</u>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및 학생 수</u> <u>등을</u> -----.
--	--